

대학구조개혁에 관한 규정(3-1-20)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건양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건학이념을 구현하고 중장기발전계획에 따라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학과·전공(이하 '학과'라 한다.) 구조개혁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조개혁'이란 학과의 정원조정, 신설, 통합, 모집중단, 폐지, 변경 등과 관련한 조치를 통해 대학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2. '정원조정'이란 학과 입학정원의 증원 또는 감원을 말한다.
3. '학과신설'은 새로운 학과의 개설을 말한다.
4. '학과통합'은 기존 2개 이상의 학과를 1개 학과 또는 학부로 통합하는 것을 말한다.
5. '모집중단'은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는 것을 말하며, '학과폐지' 전 단계이다.
6. '학과폐지'는 모집중단 후 편제정원이 완전히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7. '학과변경'은 명칭 및 소속단과대학의 변경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 「학칙」 제3조에 규정된 대학, 학부(전공)와 「대학원 학칙」 제4조에 규정된 대학원, 학과의 편제 및 입학정원 조정에 적용한다.

제4조(구조개혁의 원칙) 구조개혁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의한다.

1. 대학교육과 환경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처
2.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 지침 이행
3. 대학발전계획에 의한 정책 수행
4. 대학재정의 효율적 운용

제5조(구조개혁 관련 조직 및 절차) ① 대학구조개혁은 기획조정실에서 관장하고, 대학원은 대학원에서 관장한다.

② 구조개혁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조개혁 대상 선정 및 계획(안) 수립
2. 대상 학부(과) 및 단과대학 의견 수렴
3. 교무위원회, 대학원위원회 심의
4. 대학평의위원회 심의(단, 대학원은 예외)
5. 결과 통보 및 관련 부서 후속조치 수행

제6조(구조개혁의 기준) ① 정원은 신입생 모집 경쟁력을 감안하여 증감할 수 있다.

② 대학의 학과 통합, 폐지, 변경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기준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해당졸업년도 졸업생의 취업률 2년 연속 학교 평균에 미치지 못할 경우
 2. 재학생 충원율이 학교 평균에 미치지 못할 경우(단, 신설학과 경우는 예외)
 3. 학부(과)평가 결과 2년 연속 하위 30%에 속할 경우
 4. 신입생 등록률이 학부(과) 정원의 80%이하로 2년 연속 유지되는 경우
 5. 제1호 ~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대학 특성화 등 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③ 대학원의 학과 폐지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기준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입학인원이 2년 연속해서 석사과정은 5명, 박사과정은 3명 미만인 경우
 2. 2년 연속해서 재적생 대비 중도탈락률이 20% 이상인 경우
- ④ 대학의 학과 신설은 학생 모집과 취업에 경쟁력 있는 전략육성 분야로 하며, 대학 총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신설한다.
- ⑤ 대학원의 학과신설은 교육부 ‘대학원 및 학위과정의 학과(전공) 신설 지침’에 따른다. 단, 일반대학원의 경우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위한 연구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통합 학과로 운영 시 우선 신설한다.
- ⑥ 학부(과)평가의 세부 기준 및 방법은 ‘학과평가내규’에 따른다.

제7조(폐지 및 통합 학과의 교원 및 학생) ① 대학구조개혁에 따라 폐과가 결정된 학과의 전임교원은 다른 학과로 소속변경 할 수 있다.

- ② 폐지 또는 통합이 결정된 학과의 재적생은 졸업 시까지 기존 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다만,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다른 학과로 전과를 허용할 수 있다.
- ③ 기타 세부사항은 ‘구조개혁에 따른 교원·학생처리에 관한 내규’에 따른다.

제8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규정을 따르며, 관련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